(첨 부3)

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

취업지원 관련 법령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시험 가점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공

1 채용시험 가점 부여 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, 제2항)

가.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에 **가점(만점의 10% 또는 5%)**을 하여야 함

나. 채용시험이 1)필기 · 실기 ·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거나 각 시험이 둘 이상의 과목인 경우, **각 시험별 · 과목별로 가점**을 함

⇨ 실시기관의 자체 규정상 각 전형별 일정 점수 이하 탈락기준이 있는 경우,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탈락 여부 결정

※ 단, ①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, ②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

2 「가점합격 상한제」에 따른 합격자 결정 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)

가. '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가점합격자)'의 의미

⇨ **가점으로 인하여 합격점수를 넘은 사람**

※ 가점을 받았지만,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도 합격점수를 넘은 사람은 가점 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

나. '선발예정인원'의 의미

⇨ 공고상 '**최소 모집단위**'의 **최종 선발인원(=모집인원)**

상이한 모집 분야인 경우

모집단위	모집인원 (=선발예정인원)
행정	**1명**
보건	**2명**
시설	**3명**
통신	**4명**

동일한 모집 분야지만 지역 단위로 채용
* 서울·나주·원주별 채용 별도 실시

분야	모집단위	모집인원 (=선발예정인원)
행정	서울	**8명**
	나주	**3명**
	원주	**4명**
보건	서울	**2명**

1) 예시 규정임. 즉 1차 · 2차 · 3차시험 등으로 구분된 시험 전부를 말함

다. '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'의 의미

⇨ 합격자 결정 시 **가점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0%내**에서 결정

※ 경우에 따라 가점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가점합격자가 상한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을 합격자에서 제외하고,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
(예시1) 선발예정인원이 8명인 경우, 가점합격자 상한 인원은 2명임

i) 가점합격자가 0~2명인 경우, 충족

ii) 가점합격자가 3명인 경우, 상한 인원 초과

→ 후순위 가점합격자 1명을 합격자에서 제외, 응시자 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
(예시2) 필기시험 합격자: 10명(가점합격자 상한인원: 3명), : 취업지원대상자

응시자	원점수 (a)	가점 (b)	합산점수 (a+b)	순위	가점합격 여부	결정방법
A	95	5	100	1	부	1) 가점점수를 기준으로 '합격선' 결정 2) 합격선과 원점수를 비교, '합격선>원점수' 인 응시자를 가점합격자로 인정 (응시자 D,G,I 해당) ※ 응시자 A는 가점을 받았지만 원점수로도 합격선 이상이므로 가점합격자가 아님 3) 최종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A~J(10명)로 결정. ※ 가점합격자는 응시자 D,G,I(3명)로 가점합격자 상한 충족
B	99	-	99	2		
C	98	-	98	3		
D	**87**	**10**	**97**	**4**	**여**	
E	96	-	96	5		
F	95	-	95	6		
G	**84**	**10**	**94**	**7**	**여**	
H	93	-	93	8		
I	**87**	**5**	**92**	**9**	**여**	
J	90	-	***90**	10		
K	88	-	88	11		
L	82	5	87	12		
M	81	-	81	13		

(예시3) 모집단위가 다른 경우 가점합격상한제 적용(예)

모집단위	모집인원 (=선발예정인원)
행정	**1명**
보건	**2명**
시설	**3명**
통신	**4명**

통신 직렬에서만 가점합격자 1명 가능

분야	모집단위	모집인원 (=선발예정인원)
행정	서울	**8명**
	나주	**3명**
	원주	**4명**
보건	서울	**2명**

행정(서울)과 행정(원주) 채용시험에서 가점합격자 각각 2명, 1명 가능

라.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

⇨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의 경우, **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**하며, **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*(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)

(예시4) 선발예정인원: 3명(가점합격자 없음), : 취업지원대상자

응시자	원점수 (a)	가점 (b)	합산점수 (a+b)	순위	합격여부	결정방법
A	99	-	99	1	여	1) 원점수로 '합격선' 결정 2) 최종적으로 A, B, C(3명) 합격 ※ 응시자 B는 가점을 받았지만 가점합격자는 아님(원점수 합격) 3) 이때,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
B	91	5	96	2	여	
C	92	-	92	3	여	
D	90	-	90	4	부	
E	87	10	97	5	부	

⇨ **각 시험단계별로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*(원점수로만 평가)

(예시5) 채용시험이 1차, 2차, 3차 시험으로 구분된 경우

구 분	1차 필기시험 (선발예정인원의 5배)	2차 실기시험 (선발예정인원의 2배)	3차 면접시험 (선발예정인원)
선발예정인원: 3명	· 합격예정인원 15명 **·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**	· 합격예정인원 6명 **·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**	· 합격예정인원 3명 **·가점합격 상한인원 0명**
선발예정인원: 4명	· 합격예정인원 20명 · 가점합격 상한인원 6명	· 합격예정인원 8명 · 가점합격 상한인원 2명	· 합격예정인원 4명 · 가점합격 상한인원 1명

⇨ 다만,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**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**

*(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)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있음

(예시6)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지만,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

- 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4명 응시 ⇒ 가점합격자 미발생
- **선발예정인원이 3인인 채용에서 1~3명 응시 ⇒ 가점합격자 발생* 가능**

*응시자에게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

⇨ 또한, **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**하는 것은 **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적용**하여야 함(제31조 제4항)

마. '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'과 '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'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

⇨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서는 가점 부여 및 가점합격 상한제를 적용, **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**에서는 **가점합격 상한제만** 적용

(예시7) 점수 환산 불가능한 시험이 포함된 경우

1차 필기시험 (점수 환산 가능)	2차 실기시험 (점수 환산 가능)	3차 면접시험 (점수 환산 불가능)
·가점 부여 ·가점합격 상한제 적용	·가점 부여 ·가점합격 상한제 적용	**·가점 미부여** **·가점합격 상한제 적용** *** 1차 필기시험, 2차 실기시험 가점 합격자가 3차 면접시험 합격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**

(예시8) 1차 필기(5배수, 합격선 92점), 2차 면접을 통해 5명을 최종선발하는 경우
- 최종합격자는 2차 면접 합격자 가운데 1차 필기시험 고득점 순위로 결정

응시자	1차 필기			2차 면접	합격여부	결정방법
	원점수	가점	합산점수	통과/탈락		
A	**90**	**10**	**100**	**통과**	**합격**	1) 1차 필기시험의 선발인원이 25명으로 가점합격자 7명 가능 2)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5명이 선발되는 경우, 가점합격자는 1명까지만 가능 (1차 필기시험 가점합격자인 A와 D 가운데 고득점자인 A가 합격하고 D는 탈락, 응시자 중 차순위인 F가 합격)
B	99	-	99	**통과**	**합격**	
C	98	-	98	**통과**	**합격**	
D	**87**	**10**	**97**	**통과**	**불합격**	
E	96	-	96	**통과**	**합격**	
F	95	-	95	**통과**	**합격**	
…	…	…	…	…	…	

바. 추가합격 관련 가점합격 상한제 적용

⇨ **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,** 기존 가점합격자를 포함하여 **당초 선발예정인원의 30% 내에서 합격자 결정**

(예시9) 선발예정인원: 10명(G가 임용 포기), : 취업지원대상자

응시자	원점수	가점	합산점수	순위	합격여부	결정방법
A	95	**5**	100	1	합격	1) 먼저 모든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종합점수 산출 ※ A는 가점합격자 아님(원점수로도 합격) 2) 취업지원대상자 G가 최종합격후 임용포기했으므로 차상위자(11위)인 K를 합격 처리 (취업지원대상자 L은 12위이나 종합점수가 11위 K보다 낮으므로 '가점합격 상한인원'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)
B	99	-	99	2	합격	
C	98	-	98	3	합격	
D	**87**	**10**	**97**	**4**	**합격**	
E	96	-	96	5	합격	
F	95	-	95	6	합격	
G	**84**	**10**	**94**	**7**	**포기**	
H	93	-	93	8	합격	
I	**87**	**5**	**92**	**9**	**합격**	
J	90	-	**90**	10	합격	
K	88	-	88	11	추가합격	
L	77	5	82	12	탈락	
M	81	-	81	13	탈락	

사. "취업지원 대상자"만 모집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본문*이 적용되는지 여부

*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

⇨ 가점합격자 30% 상한 규정은 **일반인과 취업지원 대상자가 모두 응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만 적용**

⇨ 보훈특별고용 등 **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**으로 **제한경쟁 채용시험**시 '취업지원 대상자'별 **가점**(만점의 10%, 만점의 5%)을 **구분**하여 적용

['가점 구분' 적용 이유]

- '07.3.29.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군경 자녀 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가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취업지원 대상자 사이에 가점비율의 차이(5%, 10%)를 두어 **가점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당락이 좌우**될 수 있으므로
- 보훈처의 특별고용(특별채용)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**구분하여 가점**하도록 함

(예시10)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 5명 선발

응시자	원점수 (a)	가점 (b)	합산점수 (a+b)	순위	합격여부
A	89	**10**	99	1	**합격**
B	90	**5**	95	2	**합격**
C	87	**5**	92	3	**합격**
D	81	**10**	91	4	**합격**
E	85	**5**	90	5	**합격**
F	82	5	87	6	탈락
G	80	5	85	7	탈락

3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[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]

가.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, 각 전형(서류·필기·실기·면접 등)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**우선**하여야 함

※ 선발예정인원 수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며, 모집 공고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

(예시11) 선발예정인원: 4명, ▭ : 취업지원대상자

응시자	원점수 (a)	가점 (b)	합산점수 (a+b)	순위	합격여부	결정방법
A	95	-	95	1	합격	D는 가점을 부여한 점수로 E와 동점임 동점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규정에 따라 'D'를 합격자로 결정
B	90	-	90	2	합격	
C	89	-	89	3	합격	
*D	75	10	85	4	합격	
*E	85	-	85	5		
F	70	-	70	6		
G	65	-	65	7		

나. 취업지원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하여 '가점합격자 상한 인원(채용예정인원의 30%)'을 초과하는 경우

- 취업지원실시기관 내 채용 관련 규정 중 **'동점자 처리기준' 등에 따라 합격자 선정**

참고 **관련 규정**

□ 국가유공자법

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

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
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·직급·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

제41조의3(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)

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,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, 5·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,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(이하 '가점합격자'라 한다)에서 제외한다.

③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,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, 5·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,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'선발예정인원'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.

④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,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